

의안번호	2202316
의 퇴 인	김주영 의원
회 답 일	2024.09.04.
추 계 번호	24C2333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24조의2 (학급당 적정 학생 수 등)	(제1항) 교육부장관은 제11조의2제2항에 따른 교육 관련 지표 및 학생 수 추계 등 예측통계를 바탕으로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제2항)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항)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제4항)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항) 그 밖에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의무규정

II. 미첨부 근거규정

1. 근거 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미첨부 근거 규정
1	안 제24조의2 (학급당 적정학생 수 등)	제3호: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2. 상세 사유

- 개정안은 교육부장관으로 하여금 매년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을 수립·고시하도록 하고, 교육감으로 하여금 학급당 학생 수 20명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학교별·학급당 학생수를 결정하고, 관할 학교의 학

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재정지출이 증가하여 추가재정소요 발생 가능

- 개정안 제24조의2제1항에 따른 학급당 적정 학생 수에 관한 기준 수립·고시를 위하여 연구용역, 토론회·공청회 등을 추가로 시행할 경우 재정소요가 발생할 수 있으나, 기존 논의자료¹⁾를 바탕으로 교육부 등의 내부 논의를 통하여 기준을 수립할 경우 재정소요가 추가되지 않을 수 있음²⁾
- 개정안 제24조의2제3항³⁾에 따른 실태조사는 교육부에서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교육통계의 학생수·학급수 조사와 유사하므로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비용추계의 대상에서 제외
 - 교육부는 현재 한국교육개발원에 위탁하여 매년 교육통계를 산출·관리하고 있으며⁴⁾, 해당 조사 내용에 지역별, 학교급별(초·중·고), 학년별 학급 수와 학생 수에 관한 정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개정 규정에 부합하는 통계 조사가 이미 실시되고 있는 것으로 간주⁵⁾
- 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⁶⁾은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의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적정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시행될 경우 관할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하여 국·공립 학교를 신설하거나 학급을 신축·증축할 수 있으므로 지방교육재정 지출이 증

1) 적정 학생 수 기준과 관련하여서는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2210호, 공포번호 제18456호)」,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심사 과정 및 ‘2021 교육현안 국회연속토론회 : 미래를 위한 학급당 학생수와 교원정원’ 등에서 논의된 바 있음

2) 또한, 제1항의 고시의 법적성격이 지속성을 지닌다고 볼 경우 제2항에서 교육감이 결정할 학급당 학생 수 20명 기준과의 관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나, 본 추계에서는 제1항의 기준이 제2항의 20명 범위와 유사하게 설정된다고 가정함

3) 안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4) 사업명: 교육기본통계조사·관리(일반회계, 4705-301)

5) 개정안은 실태조사의 주체를 ‘교육감’으로 규정하여 실시주체가 다르나, 개정안이 현재 산출되고 있는 교육통계의 공동활용 등을 통하여 시행되는 것으로 가정함

6) 안 제24조의2(학급당 학생 수 기준 등) ② 교육감은 관할 구역의 교육환경 등을 고려하여 학교별 학생 수 및 학급당 학생 수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급당 학생 수는 20명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교육감은 관할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한다.

④ 교육감은 제3항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 필요한 경우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가할 수 있음⁷⁾

- 안 제24조의2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추가재정소요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을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과 추진 규모에 따라 결정되는데, 현재 이와 관련된 사항이 하위 법령으로 위임되어 세부적인 내용을 알 수 없으므로 합리적인 가정을 통해 소요 비용을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음⁸⁾
 - 개정안에 따라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로 줄이기 위해서는 ①과밀학급 문제가 발생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학교를 신설하는 방안, ②기존 학교 내 학급을 신축·증축하는 방안, ③기존 특별교실 등을 전환하여 일반학급을 확충하는 방안, ④학생 분산 배치를 위해 통학구역을 조정하고 원거리 통학생을 중심으로 통학버스·교통비 등 통학 지원을 실시하는 방안 등을 고려할 수 있음
 - 이 중 학교를 신설하는 경우 학교용지 매입 및 건물 신축 비용, 학급을 신·증축하거나 특별교실을 전환하는 경우 시설비 및 내부비품비, 통학구역을 조정하는 경우 통학 지원을 위한 교통수단(통학버스) 구입 또는 임차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추계 대상과 소요액이 상이함
 - 이에 개정안에 따른 소요 비용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 감축 방향을 바탕으로 사업량(학교수, 학급수, 통학 지원 대상 학생수 등)과 단가(학교 신설, 학급 확충, 통학 지원 단가 등)를 적절히 가정하여야 하나, 현재 학급당 적정 학생 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필요한 정보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가재정소요를 합리적으로 추계하기 어려움
- 추계를 위하여 학급당 학생 수가 20명이 되도록 학급을 신축·증축하는 방안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 학령인구의 추이와 지역별 인구 유출입 등을 고려하여 학급당 학생 수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신축·증축 필요한 학급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제출한 통계에 따르면 2024년 4월 1일 기준 초등학교·

7)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증액 교부금이 교부될 경우 국가의 추가재정이 소요될 가능성도 있음

8) 안 제24조의2제4항의 ‘학급당 적정 학생 수’가 동 조 제2항의 학급당 학생 수 20명이하로 설정되는 것으로 가정함

중학교·고등학교의 학급 중 학생 수가 20명을 초과하는 학급은 경기도 5만 713개, 서울특별시 2만 3,395개 등 전국에 총 16만 3,511개가 있음

* [참고자료] 2024년 학생 수별 학급 수 현황(시도별·학교급별)

- 이 중 추계기간 동안 학령인구의 변화로 학급당 학생 수가 감소하여 과밀 문제가 자연 해소되거나 인구 유입의 증가로 과밀 문제가 새로이 발생하는 지역 및 학교급이 있을 수 있으나, 현 시점에서 지역별·학교급별 학생 수의 증감 추이를 예측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추계에 필요한 신축·증축 대상 학급의 수를 합리적으로 추계할 수 없음
- 이에 따라 교육감이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내에서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는 경우 발생하는 추가재정소요를 추계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개정안은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3호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에 해당

Ⅲ. 부대의견

- 없음

Ⅳ.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사회비용추계과	정혜승	이진우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정혜승	02-6788-4627	hs0387@assembly.go.kr

[참고자료] 2024년 학생 수별 학급 수 현황(시도별·학교급별)

	20명 이하				20명 초과				학급 수 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소계	초	중	고	합계
서울	7,223	1,383	2,431	11,037	10,212	6,850	6,333	23,395	17,435	8,233	8,764	34,432
부산	2,292	344	1,595	4,231	4,707	2,753	1,795	9,255	6,999	3,097	3,390	13,486
대구	1,585	256	736	2,577	3,783	2,215	1,897	7,895	5,368	2,471	2,633	10,472
인천	2,327	536	968	3,831	4,773	2,517	2,248	9,538	7,100	3,053	3,216	13,369
광주	1,939	200	333	2,472	2,007	1,598	1,427	5,032	3,946	1,798	1,760	7,504
대전	1,924	290	782	2,996	1,749	1,332	1,048	4,129	3,673	1,622	1,830	7,125
울산	1,021	119	306	1,446	1,963	1,188	1,019	4,170	2,984	1,307	1,325	5,616
세종	775	61	106	942	844	598	479	1,921	1,619	659	585	2,863
경기	7,608	1,210	2,028	10,846	25,727	12,898	12,088	50,713	33,335	14,108	14,116	61,559
강원	2,579	372	646	3,597	1,560	1,259	1,067	3,886	4,139	1,631	1,713	7,483
충북	1,867	361	513	2,741	2,412	1,486	1,236	5,134	4,279	1,847	1,749	7,875
충남	3,019	521	818	4,358	3,251	1,971	1,646	6,868	6,270	2,492	2,464	11,226
전북	3,226	492	932	4,650	1,856	1,672	1,324	4,852	5,082	2,164	2,256	9,502
전남	3,176	673	1,071	4,920	2,099	1,497	1,223	4,819	5,275	2,170	2,294	9,739
경북	2,750	744	1,112	4,606	3,643	2,227	2,009	7,879	6,393	2,971	3,121	12,485
경남	3,547	709	1,107	5,363	5,464	3,200	2,789	11,453	9,011	3,909	3,896	16,816
제주	654	105	90	849	1,234	694	644	2,572	1,888	799	734	3,421
전국 합계	47,512	8,376	15,574	71,462	77,284	45,955	40,272	163,511	124,796	54,331	55,846	234,973

주: 1) 2024년 4월 1일 기준

2) 특수학교, 기타학교, 방송통신중·고등학교는 제외

3) 복식학급의 경우 인가받은 학년으로 하되, 인가학년이 없는 경우 최고 학년으로 분류

자료: 한국교육개발원